

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	처리기간 30일				
신청인	성명	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	(전화번호: /휴대전화:)				
대상 문화재	명칭								
	종류				수량				
	소재지(보관 장소)								
보호구역 · 보호물									
행위유형	[]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·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	[]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	[]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·진동·약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	[]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	[]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·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	[]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·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	[]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	[] 천연기념물이 서식·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동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동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	[]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
	위 치								
신청사항	내 용								
	사 유								
참고사항	※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,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.								
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	착수			소요경비		원 재원			
	완료			그 밖의 사항				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행위 계획서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. 다만,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가. 건설공사 등 땅깍기·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·공작물 설치의 경우: 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. 「건축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: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. 현장 사진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해당 신청 행위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 유의사항

-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(용도·위치·대지면적 등), 지역·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, 건축물의 규모(건축면적·연면적·높이·층수 등),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